

# 이혼숙려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 자발적으로 이혼관련상담기관을 내방한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Delay Before Divorce Program in Korea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석사 박상진\*  
교수 김양희\*\*  
조교수 어성연  
부교수 박정윤  
조교수 장영은  
석사과정 정진희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Master:* Park, Sang-jin

*Professor:* Kim, Yang-hee

*Assist Professor:* Auh, Seongyeon

*Associated Professor:* Park, Jeong-yun

*Assist Professor:* Chang, Young-Eun

*Graduate Research Assistant:* Jung, Jin Hee

##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examine perceptions of the Legal Delay Before Divorce Program (LDBDP) in Korea among individuals, (b) to predict the need for the LDBDP, and (c) to predict the need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with

\* 주저자: 박상진 (csbach@naver.com)

\*\* 교신저자: 김양희 (kimyhec@cau.ac.kr)

predicting variables. Two hundr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the clients of a legal aid center in Seoul.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knew about and expressed their need for the LDBDP. Participants agreed to the LDBDP because it could prevent impulsive divorce, provide time to prepare for post-divorce life, provide support with counseling, and protect the children in families of divorce. Participants disagreed to the LDBDP because it only delayed the time to divorce, prolonged emotional suffering, and intruded on personal privacy. In the model test, the need for the LDBDP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marital instability scale, age, education, occupation, the period of living apart, and the status of voluntary divorce. The ne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age, having at least one child, having at least one minor child, marital period, and need for family life counseling in the suggested model.

**Key Words :** 이혼 전 상담(counselling before divorce), 상담요구도(need for counselling), 이혼숙려제(legal delay before divorce)

## I. 서론

요즘 한국 가족의 빠른 변화는 많이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으로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교육수준과 지위향상으로 인한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증가, 경제위기로 인한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90년 후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를 들 수 있다. 이혼율은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그 후 부분적인 감소가 있지만 20-30년 전과는 다르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증가, 의식 변화, 가부장적 가치관의 쇠퇴, 정보화 사회로 인한 다양화된 삶 등에서 비롯되어지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삶을 가족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지 않으려는 것의 결과이다.

그래서 불만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새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생각이 더해지면서 이혼이 특정계층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가족현상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최승민, 2008).

그래서 과거에는 이혼이 결혼의 실패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선택이고, 불행한 결혼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이혼 자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문제로 여기는 태도보다는 이혼 전후 과정, 이혼 후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어지고 있다. 이혼여부보다는 이혼 후 삶에 대한 효율적인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이혼 후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혼과정에서의 현재 결혼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선택인 한부모가족 또는 독신으로의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문제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한다. 이혼에 앞서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이혼 후 생활을 신속하게 적응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김상용, 2004).

이러한 맥락과 충동적 이혼에 대한 후유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가 이혼숙려제이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혼숙려제는 성급한 이혼의 부작용의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제도이다. 이혼숙려기간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의이혼 전의 숙려기간동안 이혼신청자들은 전문 상담기관에서 이혼절차와 이혼 후에 발생가능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협의하고, 현재의 결혼생활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2005년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법원 80%에서 2-4주간의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협의이혼 취하율이 상승하여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민일보, 2006; 조선일보, 2007).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혼숙려제와 관련된 상담제도가 강제성을 띄지 못하며 상담의 필요성과 결과성을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혼숙려제는 이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다른 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제도 도입 배경에서부터 실시 전 과정에서 수혜자가 되는 이혼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정부나 관련부처에서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은 공급자의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가 보다 효과성을 높이고, 이혼 전후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자 입장보다 이용자 입장의 욕구 반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숙려제도의 요구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이혼의 당사자들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최근의 이혼 또는 이혼숙려제도에 관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제도관련 연구는 미미하며 시점으로 볼 때 이혼 후 적응이나 문제를 다룬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문현숙, 김득성, 2000; 김득성, 2002; 이의수, 2004, 정수경, 2007; 박태영, 2008). 즉, 이혼 한부모 가족의 문제와 지원책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혼숙려제 관련 연구는 이혼 전상담이나 제도 도입 초기에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시행의 적절성을 고찰하는 연구는 미미하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3; 유재성, 2004; 김명순, 2006; 박성주, 2008). 관련연구는 이혼 전후의 심리적 적응관련 연구(이의수(2004; 김명순, 2006; 박성주, 2008), 이혼숙려제도의 정착관련 연구(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3; 유재성, 2004; 성정현, 양심영, 2008)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 제도도입과 시행에 대한 연구 역시 대부분 공급자인 법원이나 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제도 이용자의 입장이나 요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숙려제는 이혼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쌍방의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를 중재할 수 있고, 이혼 후의 생활을 예측하고 준비함으로써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 고려 대상자들이 이혼결정 여부에서 요구하는 상담요구도와 이혼숙려제도 인식 및 필요성 등

에 대한 요구를 일차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이 원하는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용을 파악하고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태도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이 제도 정착과 활성화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시행되는 정책이 수혜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혼 후의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으로 이혼과정의 지원과도 연결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이혼숙려제도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경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혼관련 변인, 이혼숙려제도 관련 변인에 따라 예측 되는가?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상담요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혼관련변인, 이혼숙려제도 인지에 따라서 예측 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이혼 현황 및 이혼과정에 대한 이해

이혼이란 법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되던 이혼을 증가세가 200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7년 124.1천건에 비해 2008년에는 동안 이혼은 116.5천건으로 7.5천 건 약 6.1% 감소하였으나 하루 평균 319쌍이 이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통계청, 2008).

기간별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4년 이하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전체 이혼 중 23.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신혼기와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동거기간이 5~19년인 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를 보는 전문가들은 이혼숙려제의 도입으로 인한 신고 공백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이혼당시 자녀유무를 살펴보면 2008년에 이혼한 부부 중 54.0%인 6만 3천 쌍이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절반이상이 차지하고 있어서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이혼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사유는 몇몇 연구(통계청, 2008; 김유순, 2006) 등에서 공통적인 것인 성격차이가 가장

〈표 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천건	135.0	145.3	167.1	139.4	128.5	125.0	124.6	116.5
증감율/%	12.5	7.6	15.0	-16.6	-7.8	-2.7	-0.4	-6.1
조이혼율	2.8	3.0	3.5	2.9	2.6	2.6	2.5	1.7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 조이혼율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

〈표 2〉 이혼사유

이혼사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배우자 부정	8.7	8.6	7.4	7.0	7.6	7.6	7.8
정신·육체적 확대	4.7	4.8	4.3	4.2	4.4	4.5	4.8
가족간 불화	17.6	14.4	13.0	10.0	9.5	8.9	8.0
경제문제	11.6	13.6	16.4	14.7	14.9	14.6	13.6
성격차이	43.0	44.7	45.3	49.4	49.2	49.7	46.8
건강문제	0.7	0.6	0.6	0.6	0.6	0.8	0.7
기 타	13.7	13.3	13.1	14.1	13.8	13.9	18.2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많았으며 경제문제, 가족간 불화, 가정폭력, 대인관계 갈등문제행동 등이 제시되었다(표 2 참조).

개인적 문제, 부부관계 문제, 가족관계 문제가 특정한 시점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오래 동안 축적되어온 문제가 표출될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 및 결혼의 질과 관련된 성격차이, 생활양식의 차이, 대화단절 및 무관심, 애정 상실 등이 이혼결정과정에서 점점 더 중시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이주홍, 2002).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부부 상호간의 이해와 생활 방식의 차이를 인식하는 노력이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어느 한 쪽의 유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부부 상호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혼에 대한 고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부부 각자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부부 갈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이혼을 하게 될 경우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는 이혼 전 상담은 이혼에 대해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율적 합의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는 제도로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배려, 이혼 후의 양육문제

등도 모두 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김주수, 김상용, 2006). 2006년까지만 해도 법원은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 이혼의 결과와 관련하여 실제로 아무런 합의가 없어도 이혼의사만 합치되면 간단하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하는 부부 모두가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기간중 이혼 전 상담을 받을지의 여부는 부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한편 이혼은 가족생활의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혼과정은 학자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Bohanan(1970)은 이혼과정을 6단계로 분류하였다. 이혼에 직면한 부부들은 이혼이 어떤 분명한 시작과 끝을 가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는 다른 과업을 수반하며, 각 단계의 경험 또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여 이혼과정의 복잡성을 제시하였다(문현숙, 김득성, 2003). Kressel과 Deutch(1977)는 이혼 전, 이혼과정, 이혼 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이혼 전 단계는 결혼만족도와 친밀감이 감소하고 화해를 시도하기 보다는 회피하거나 공격하며, 결혼 결속력이 파괴된다고 하였다. Wallerstein과 Blakeslee(1989)는 이

혼과정의 단계를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민감한 단계, 전이단계 그리고 새로운 안정감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Carter와 McGoldrick(1979)은 이혼 과정에서의 가족 변화에 대해 6단계로 구분하여 이혼과정과 가족의 변화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부관계 붕괴, 별거나 이혼 결정, 계획과 준비, 별거, 법적과정, 이혼 후 가족이 그것이다. 국내에서는 김명순(2006)이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이혼을 예측하는 부부 심리단계, 이혼과정에서의 심리발전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이혼이 한 순간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혼전, 과정, 이혼 후에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혼숙려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2. 이혼숙려제도의 개념과 관련 선행연구 고찰

이혼문제는 이혼당사자와 관련되기보다는 이혼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특히 자녀들의 복지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혼 절차로 재판상 이혼만을 허용하거나 숙려기간이나 상담 등을 요구하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결국 이혼 후의 후유증을 줄이고, 적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에 앞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혼법의 제정 의미는 파탄된 혼인관계의 해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혼 당사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원치 않는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통

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이혼 후 생활을 신속하게 적응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혼인의 신속한 해소' 그 자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혼인관계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부부와 특히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등 이혼의 결과에 대하여 타당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김상용, 2004).

이러한 맥락과 충동적 이혼에 대한 후유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가 이혼숙려제이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범 도입되고, 2008년 6월 이후 확대되었다(이희배, 2008). 이혼숙려제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개월간 정식 이혼을 유예,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성급한 이혼의 부작용의 막아보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를 제출한 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등의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성급한 이혼의 부작용의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제도다. 이혼숙려기간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의이혼 전의 숙려기간은 당사자들은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에 현실로 다가올 문제들, 특히 재산분할, 자녀 양육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의 여부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김상용, 2004).

오재은(2006)은 가정해체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정책개선방안 제시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혼숙려제 도입의 필요성과 숙려기간동안의 상담제도 도입의 불가피성과 서구 제도를 소개하였다. 김상용(2004)도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를 협의이혼시에 도입가능할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도 도입을 전후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주장하는데 치중되어 있고, 제도시행의 실효성이나 이용자 입장의 요구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혼숙려제와 관련된 연구 중 하나가 이혼 전 상담에 대한 영역이다. 이혼 전 상담은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시행하기에 앞서, 부부 각자 혹은 쌍방이 제 3자인 상담자에게 자의나 타의로 상담을 의뢰하여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혼 전 상담에 관한 연구로서 이혼자를 대상으로 이혼 전 상담에 대한 제언을 시도한 연구(최승민, 2007; 이의수, 2004)와 이혼 위기 부부 대상의 프로그램 관련 연구(한석근, 2005; 구혜경, 2007; 박성주, 2008) 등이 있다.

박성주(2008)의 연구나, 한석근(2005) 등은 이혼 위기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이혼 위기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종교적 돌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혜경(2007)은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이혼 고려, 이혼 장애 요인을 부

부간 차이 및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있는데, 부부가 이혼고려경험에 미치는 주요 변수가 다름을 밝히고 있다. 이의수(2004)는 이혼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이혼 전 상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전문 상담원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담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혼 전 상담은 이혼 중재와는 달리 부부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혼치료와 이혼중재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전 상담은 대부분의 부부들이 무비판적, 충동적, 이기적, 아노미적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저 이혼율 사회로 회복시키는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연구는 양적 부족에서부터 연구주체가 제도를 시행하는 공급자 입장이며, 이혼을 고려하거나 준비하는 이들에 대한 수혜자 중심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혼 전 상담을 의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추정해볼 때 이혼숙려제도의 효율성일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자 입장의 숙려제도의 필요성과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이혼숙려제 시행이 4년째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이혼숙려제에 대해 이혼고려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이혼 과정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 소재 가정법률상담소를 내방한 기혼 남녀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를 가정법률상담소 내방자로 선정한 것은 본 기관이 이혼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이곳을 내방하는 이들은 이혼과정에 있는 대상자와 이혼을 고려하는 대상자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던 내방자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는 이혼숙려기간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상담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참가자의 비중이 내방하지 않은 이혼과정에 있는 대상자와 이혼을 고려하는 대상자들에 비해 높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조사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내담자 중 10명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203부의 설문지가 내방자에게 배포되었고, 이중 20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99.0%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하고 총 198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함된 측정도구는 아래 <표 3>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총 9개 문항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자녀유무, 미성년자녀

유무, 혼인기간, 별거기간 등을 포함하였다. 이혼 고려 관련 변인은 이혼의 절차를 시행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총 4개 문항으로 별거 여부, 별거 기간, 이혼 고려 여부 그리고 이혼요구의 자발성,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결혼불안정성은 결혼 생활의 와해성향 혹은 후회, 등을 측정하는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혼 전 상담 요구 관련 측정도구는 총 19문항으로 이혼 전 법률, 심리 그리고 가족 상담요구의 유무, 각 상담유형의 필요한 세부 이유를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이혼숙려제에 대한 인식으로 이혼숙려제의 인지, 필요성유무, 이혼숙려제가 필요한 이유, 필요 없는 이유, 등이 측정되었다.

###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척도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실시하였다. 이혼숙려제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이혼 전 법률, 심리 그리고 가족상담 요구의 유무의 영향변인들을 예측하기 위하여 명목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행하였다.

<표 3> 측정도구의 구성

구분	내용	문항수	신뢰도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자녀유무, 미성년자녀유무, 혼인기간, 별거기간	9	
이혼 고려 관련 변인	이전 별거 여부, 별거기간, 이혼고려여부, 이혼요구 자발성	4	
결혼불안정성	결혼생활 와해 성향 정도, 결혼후회 정도, 현재 결혼의 지속의지, 부부간의 유대감 정도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평가	12	.875
이혼 전 상담 요구	이혼 전 법률상담, 심리상담, 가족상담 요구 필요성 이혼 전 법률상담, 심리상담, 가족상담 요구 필요 이유	19	
이혼숙려제에 대한 인식	이혼 숙려제 인지, 필요성 유무, 필요 및 불필요 이유	4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역	변수	집단	n (%)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성	29 (14.6)
		여성	170 (85.4)
	연령	20대	12 (6.0)
		30대	86 (43.2)
		40대	59 (29.6)
		50대	33 (16.6)
		60대 이상	9 (4.5)
	학력	무학	3 (1.5)
		초졸	12 (6.0)
		중졸	20 (10.1)
고졸		78 (39.2)	
대졸 대학원		2 (36.2) 14 (7.0)	
직업	1군: 무직,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118 (59.3)	
	2군: 사무직, 교육직, 기타	81 (40.7)	
소득	월 평균 300만원미만	177 (88.5)	
	월 평균 300만원이상	23 (11.5)	
자녀유무	없다	78 (39)	
	1명 이상 자녀가 있다	122 (61)	
미성년 자녀 여부	없다	87 (43.7)	
	있다	111 (56.3)	
결혼기간	1년 미만	11 (5.5)	
	1년 ~5년	47 (23.6)	
	6년 ~10년	37 (18.6)	
	11년 ~20년	51 (25.6)	
	20년 이상	53 (26.6)	
이혼고려 관련 변인	이전 별거 여부	별거 경험 있음	113 (57.1)
		별거 경험 없음	85 (42.9)
	별거 기간	6개월 미만	64 (56.1)
		6개월 이상	50 (43.9)
이혼 고려 여부	고려해 보지 않음	171 (85.5)	
	고려해 봄	29 (14.5)	
이혼 요구 자발성	본인 혹은 본인과 상대방이 요구(자발성)	143 (71.5)	
	상대방만이 요구 (비자발성)	57 (28.5)	
이혼 전 상담 요구 관련 변인	법률 상담	필요하다	162 (81.8)
		필요하지 않다	36 (18.2)
	심리 상담	필요하다	115 (57.8)
필요하지 않다		84 (42.2)	
가족 상담	필요하다	118 (59.3)	
	필요하지 않다	81 (40.7)	
이혼숙려제 관련 변인	이혼숙려제 인식	전혀 몰랐다	37 (18.7)
		알고 있었다	161 (81.3)
	이혼숙려제의 필요성	필요하다	131 (66.2)
	필요하지 않다	67 (33.8)	

〈표 5〉 결혼불안정성

개념	항 목	평균 (S.D.)
결혼 불안정성	전 체	3.140 (0.37)
	나는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4.22 (1.05)
	나는 결혼생활을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데 지쳤다.	4.08 (1.08)
	나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4.06 (1.14)
	나 또는 배우자가 이혼을 심각하게 제안한 적이 있다.	3.88 (1.20)
	이제는 결혼생활을 잘해 보려고 해도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	3.85 (1.24)
	배우자와 불화가 있을 때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84 (1.23)
	결혼생활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2.94 (1.14)
	*앞으로 우리 부부관계가 잘되길 바라며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47 (1.34)
	나는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별거에 대하여 상담기관 전문가에게 의논한 적이 있다.	2.38 (1.41)
	*우리 부부는 강한 유대감이 있다.	2.11 (1.12)
	*나는 배우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한 팀을 이루었다고 느낀다.	2.06 (1.19)
	*배우자와 나의 관계는 안정적이다.	1.78 (0.98)

참조: \*역코딩 문항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총 남성이 14.6%(n=29), 여성이 85.4%(n=170)으로 여성비율이 높았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43.2%(n=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9.6%(n=59), '50대'가 16.6%(n=33), '20대'가 6.0%(n=12), '60대 이상'이 4.5%(n=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39.2%(n=78), 대졸이 36.2%(n=72), 중졸이 10.1% (n=20), 대학원졸 7%(n=14), 초졸 6%(n=12), 그리고 무학 1.5%(n=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88%가 '월 3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이었고, 12%는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39%는 아직 자녀가 없다고 응답 한 반면에 61%의 참가자들은 적어도 한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6.3%가 미성년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43%는 미성년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

았지만, 자녀가 있다고(n=122) 응답한 참가자의 90%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n=111)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의 경우 응답자의 11년-20년인 응답자가 2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1년에서 5년이 23.6%를 차지하였고 6년-10년인 비율이 18.6%, 21년-30년이 26.5%, 결혼 1년 미만이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별거관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57.1%(n=113)가 '별거 경험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들 중 56%가 (전체의 32%) 이미 '6개월 미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서 이혼 초기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85.5%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14.5%는 이전에 고려한 적이 있었노라고 응답 하였다. 이혼의 요구의 자발성에 관한 질문으로 이혼을 누가 요구 하였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71.5%가 본인이 요구하거나 쌍방이 요구하였다고 응답한 반면에 28.5%는 배우자만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혼불안정성은 '1 전혀 아니다 ~ 5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것이다(표3 참조). 그리고 모든 개별 항목을 더하여 12로 나누어 나온 결혼불안정성의 스케일 평균은 3.14로 결혼불안정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평균이 높았던 항목은 '나는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로 평균이 4.22였고 가장 낮았던 항목은 '배우자와 나의 관계는 안정적이다'로 그 평균은 1.78이었다.

#### IV.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이혼숙려제도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경향성은 어떠한가?

이혼숙려제도 관련 변인들에 대한 응답경향성은 앞서 <표 4>에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혼숙려제 인식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18.7%에 불과한 반면에 어느 정도 안다 혹은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81.3%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제도에 대한 인식이 포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는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는 총 198명이 응답하였고 이들 중 65.5% (n=131)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34.5%(n=6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보다 7명이 더 많은 205명의 응답자가 이혼숙려제가 필요한 이유 혹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문항에 중복 응답하였는데 그 경향성은 <표 6>에 제시되었다.

연구대상자가 이혼숙려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로 39.8% (n=53)가 '다분히 감정적이고 성급한 이혼을 예방할 수 있다'였고 그 다음으로 '충분히 생각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

해 서로 고려해 볼 수 있다'가 34.6%(n=46)를 차지하였고, '상담을 통해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부부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가 16.5%(n=22), '자녀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0%(n=12)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숙려를 활용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혼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혼숙려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이들의 이유로 '이미 서로 합의한 상황인데, 시간만 지체'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3.1% (n=3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6.4%(n=19)가 '절차가 복잡해짐으로써 심리적 고통이 커질 것 같다', 19.4%(n=16)가 '절차가 복잡해짐으로써 일상생활(직장 업무 등)에 방해를 받을 것 같다', 11.1%(n=8)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율권 침해' 때문이라고 하였다. 숙려제도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응답자는 이미 이혼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차의 복잡이 불행한 결혼을 오히려 지속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결과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혼숙려제도는 이혼당사자의 이혼을 요구하거나 고려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혼숙려기간 중의 상담서비스에 관련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8%가 '법률상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59.3%가 '가족생활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7.8%의 응답자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응답자들이 원하는 법률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나 이혼사유 성립여부에 관한 상담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고 이후에 이혼절차, 자녀양육, 가정폭력 관련 내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 영역에서 '부부갈등 해결방법 모색'이 26.5% (n=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 성

(표 6) 이혼 전 상담 내용 요구도 (중복응답)

구분	변인	n (%)
제도인지	전혀 몰랐다.	37 (18.7)
	알고 있다.	161 (81.3)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	131 (65.5)
	필요하지 않다	67 (34.5)
	필요한 이유 문항 (중복응답)	133 (100)
	성급한 이혼을 막을 수 있다	53 (39.8)
	미래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46 (34.6)
	자녀 복리를 위함이다	12 (9.0)
상담을 통한 이점을 얻는다	22 (16.5)	
필요하지 않은 이유 문항 (중복응답)	개인 선택에 대한 자율권 침해다	8 (11.1)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다	16 (19.4)
	심리적 고통이 커진다	19 (26.4)
	시간만 지체될 뿐이다	31 (43.1)
상담 분야	세부 내용	n (%)
법률상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162 (81.8)
	필요한 세부내용에 관한 문항들 (중복 응답)	
	이혼사유 성립 여부	93 (46.5)
	위자료, 재산 분할 등	106 (51.5)
	자녀 양육관련 문제 가정폭력 관련	83 (41.5)
	법적 처리 절차	40 (20.0)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사항	35 (17.5)
	재판 이혼 절차	84 (42.0)
	기타	11 (5.5)
심리상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115 (57.5)
	필요한 세부 문항들 (중복응답)	
	부부 성격 검사 및 분석	52 (26.0)
	부부 갈등 해결 방법 모색	53 (26.5)
	나의 심리 분석	45 (22.5)
	불안, 우울 등 정서 상태 분석	52 (26.0)
	기타	8 (4.0)
이혼 후 가족생활 문제	가족생활문제 상담이 필요하다	118 (59.0)
	필요한 세부 문항들 (중복응답)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90 (45.0)
	이혼 후 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33 (16.5)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심리적용 프로그램	77 (38.5)
기타	4 (2.0)	

격분석'과 '불안이나 우울의 정서 상태 파악' 등에 대한 상담요청이 각각 26%(n=52)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나의 심리에 대한 객관적 분석

이 22.5%(n=45), 기타가 4%(n=8)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족생활상담 영역에서는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45%

( $n=90$ )로 가장 많았고,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심리적응’ 이 38.5%( $n=77$ ), 이혼 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내용 16.5%( $n=33$ ), 기타 의견이 2%( $n=4$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응답자들이 상담영역별 요구내용은 다르지만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법률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은 연구대상 기관이 법률상담전문기관이고 이곳을 내방한 이들의 요구가 당연히 법적 자문이나 정보를 원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이혼숙려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유무)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결혼의 불안정성, 이혼관련변인, 이혼숙려제 관련변인에 따라 예측되는가?

조사대상자의 이혼숙려제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유무, 이하 인식으로 통일)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결혼의 불안정성, 이혼관련 변인 그리고 이혼숙려제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명목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이 실시되었다. 종속변수는 이혼숙려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면 1 아니오 라고 응답하면 0으로 Dichotomous 변수로 모델에 투입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명목회귀분석모델에 투입된 예측 변수들은 앞서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각 변수의 범주화 집단 간에 이혼숙려제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유의하게 다른가를 설명해 준다. 각 변수의 범주화는 각 항목을 <표 4>에 제시된 카테고리들을 그대로 투입 하였고, 결혼의 불안정성 스케일만이 12개의 아이템의 평균점수가 투입되었다.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의 인식에 명목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테스트 결과 설명력의 지표인 Nagelkerke R

Square값은 .580으로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의 58%의 변인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로 설명되는 것을 나타냈다. 검증한 모델은 데이터와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hi^2$ 값 61.241 ( $df=28$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p<.001$ ).

모델이 유의하였으므로 그 다음 단계로 각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결혼불안정성은 혼인숙려제인식을 부적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표 7>에 의하면,  $\beta$ 는 -1.773였고 이는 유의하였다( $p<.05$ ). 결혼불안정성이 증가 할수록 참가자들은 혼인숙려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의 인식은 성별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기준 집단인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5.86배나 높게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에서 남성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표 3, 14.6%)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집단에 따라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의 인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기준집단인 60대 이상의 참가자들에 비해,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응답자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할 확률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0대 그리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회귀계수와 Odds Ratio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델에서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의 인식에 있어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참가자 집단에 비해서 초등학교졸업학력은 이혼숙려제가 필요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집단의 경우, -5.657의 회귀계수와, 5.190의 Wald값 그리고 .003의 Odds Ratio를 보인다.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집단에 비해서 이혼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의 차이가 가장 컸던 집단은 무학과 중졸집단이었으나 이들의 회귀계수와 Odds Ratio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의 인식은 직업군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준집단인 사무직, 교육직 기타직중에 종사하는 응답자와 비교하여 무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좀 더 이혼숙려제가 필요없다고 응답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beta = -1.597$ ,  $Wald = 4.055$ ,  $p > .05$ ,  $Odds\ Ratio = .203$ ).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교해서

기준집단인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교해서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집단의 응답자들은 6.4배나 더 이혼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지나치게 월 300만원 이하의 사례수가 많음에(표3, 88.5%) 기인하고 있다.

자녀의 유무 그리고 미성년자녀의 유무에 따라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의 유무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혼인기간 역시 제도의 필요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혼인숙려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가 약 2.1배 이상 높았으나 그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혼관련 투입변수 중에서 별거기간과 이혼요구의 자발성은 혼인숙려제도의 필요성의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별거경험의 여부, 이혼고려 경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준 집단인 별거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별거를 경험한 집단이 이혼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는 18배 정도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별거경험 보다도 이혼숙려제에 대한 요구를

보다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변수는 별거 기간이었다. 기준 집단인 6개월 이상 별거집단보다 6개월 미만의 별거 집단이 이혼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가 4.7배 정도 높았다( $\beta = 1.557$ ,  $Wald = 5.289$ ,  $p < .05$ ,  $Odds\ Ratio = 4.743$ ). 준거집단인 이혼을 고려해 보지 않은 응답자들 보다 이혼을 고려해 본 응답자들이 이혼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는 2.5배 정도 높았으나 그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자료에서 이혼을 고려해본 집단이 이혼을 고려해 보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수를 차지하는 것에 기인한다(표3, 고려해봄 14.5% Vs. 고려해보지 않음 85.5%). 이혼요구의 자발성에 따라서 이혼숙려제의 요구의 유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본인 혹은 양방이 요구할 경우 이혼숙려제가 필요 없다고 응답할 확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만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보다, 자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어( $\beta = -2.898$ ,  $Wald = 7.283$ ,  $p < .01$ ,  $Odds\ Ratio = .055$ ).

이혼숙려제에 대해 인식은 이혼숙려제에 대한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준 집단인 이혼숙려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에 비하여 이혼숙려제에 대해서 몰랐었던 참가자들이 마이너스 값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혼 관련 상담 내용에 대한 개개인의 요구는 이혼숙려제도의 필요성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의 경우 기준집단인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참가자들보다 이혼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는 대략 3배 정도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가족생활상담이 필요하다고

〈표 7〉 이혼숙려제 필요성 모델 검증

변인	Coefficient	SE	Wald	유의확률 [T]=X	Odds Ratio	
상수	18.915	7.016	7.268	.007		
결혼불안정성	-1.773*	1.182	2.247	.015	0.170	
성별	남성 [기준] 여성	1.768	1.463	1.462	.227	5.862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기준] 60대	-22.680*** -21.390*** -19.068*** -16.805	2.450 2.294 2.327 .000	60.780 59.670 67.143	.000 .000 .000	2.39E7 5.13E7 5.23E6 2.03E6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기준] 대학원졸	21.178 -5.657* 1.402 .500 .649	.000 2.483 1.950 1.421 1.482	.000 5.190 .517 .124 .192	.000 .023 .472 .725 .661	4.309 .003 4.065 1.649 1.914
직업	무직,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기준] 사무직, 교육직, 기타	-1.597*	.793	4.055	.044	.203
소득	300만원 미만 [기준] 월 300만원 이상	1.857	1.536	1.461	.227	6.408
미성년자녀	없다 [기준] 있다	.242	1.146	.044	.833	1.274
자녀	없다 [기준] 있다	.745	1.358	.301	.583	2.107
결혼기간	1년 미만 1년 ~5년 6년~10년 11년 ~ 20년 21년 ~30년 [기준] 31년 이상	3.958 4.838 4.474 3.630 3.977	3.067 2.867 2.702 2.608 2.553	1.665 2.847 2.742 1.938 2.427	.197 .092 .098 .164 .119	52.351 126.210 87.718 37.718 53.333
별거여부	유경험 [기준] 무경험	2.912	5.850	.248	.619	18.397
별거기간	6개월 미만 [기준] 6개월 이상	1.557*	.677	5.289	.021	4.743
이혼고려	고려해 보았음 [기준] 고려해 보지 않음	.927	1.298	.509	.475	2.526
이혼 요구 자발성	본인 혹은 양방 요구 [기준] 상대방만이 요구	-2.898**	1.074	7.283	.007	.055
이혼숙려제 인식	전혀 모름 [기준] 알고 있음	-.595	.956	.387	.534	.552
법률상담요구	필요하다 [기준] 필요하지 않다	-.506	.934	.294	.588	.603
심리상담	필요하다 [기준] 필요하지 않다	1.174	.742	2.504	.114	3.236
가족생활상담	필요하다 [기준] 필요하지 않다	.134	.726	.034	.854	1.143
모델 적합도	Nagelkerke R Square $\chi^2$		.580 61.241 (df=28), p=.000			

\* p<.05 \*\* p<.01 \*\*\* p<.001

응답한 참가자들이 이혼숙려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 기회는 준거 집단보다 높았다.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이혼숙려제도 중상담요구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혼관련변인, 이혼숙려제 변인에 따라 예측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혼숙려제의 상담내용에 대한 요구의 유무(이하 상담요구도로 통일)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혼관련변인, 그리고 이혼숙려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 법률상담요구, 심리상담요구 그리고 가정생활상담요구의 세 가지 모델이 각각 본 연구의 자료와 함께 테스트 되었다. 그 결과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각각 31%변인의 법률상담요구와 30%의 가정생활상담요구의 모델들이 설명되었으나 두 가지 모델은 본 연구의 데이터와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상담의  $\chi^2=30,018$ ,  $df=27$ ,  $p>.05$ , 가정생활상담의  $\chi^2=30,589$ ,  $df=27$ ,  $p>.05$ ). 따라서 이 두 모델은 유효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심리상담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명목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와 같다. 모델 테스트 결과 Nagelkerke R<sup>2</sup>값은 .543이었고  $\chi^2$ 값 56.910 ( $df=27$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p<.001$ ). 따라서 모델의 투입변수들은 심리상담의 필요성 유무의 56.9%를 설명하고 있었고 추정된 모델은 적절하게 본 연구의 자료와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리상담요구 모델이 유효하였으므로 그 다음 단계로 각각의 예측변수들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심리상담요구 모델의 분석결과, 결혼생활의 불안정성은 심리상담요구와 정적상관계수를 보고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성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준거집단인 여성참가자에 비교해서 남성참가자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가 1.3배 높았다.

반면 연령에 따라 심리상담요구의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기준집단인 60대의 응답자들과 비교해서,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응답자들이 심리상담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좀 더 높았다. 가장 높은 회귀계수를 보여준 집단은 30대 집단이었고 Odds Ratio의 인플레이션 현상까지 보여준다 (Odds Ratio 180000000). 그 다음으로 20대와 40대 역시 높은 심리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에서 그 밖에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인 학력, 직업 그리고 소득은 유의하게 심리상담에 관한 요구도를 예측하고 있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 준거 집단인 대학원 학력의 응답자와 비교해서 대졸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좀 더 심리상담의 요구를 표출할 기회가 1.58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대학원졸 학력의 응답자에 비교해서 초졸, 중졸 그리고 고졸의 응답자들은 마이너스 회귀계수의 값들을 보이면서 심리상담에 대해 덜 호의적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나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무직,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기준집단인 사무직, 교육직,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보다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월 평균 300만원 미만의 응답자들은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의 응답자보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는 3.4배나 높았고, 1,231의 회귀계수를 보고하였다. 즉, 월소득 300만원 미만의 응답자들이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를 기준집단과 비교해서 좀 더 표출할 것 같은 성향을 보였으나 이들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을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심리상담에 유의한 영향



〈표 8〉 심리상담 예측모델

변인	Coefficient	SE	Wald	유의확률 [T]=X	Odds Ratio
상수	-29.044	4.438	42.829	.000	
결혼불안정성	1.004	1.011	.986	.321	2.728
성별					
남성	.277	.967	.082	.775	1.319
[기준] 여성					
나이					
20대	17.885***	1.744	107.848	.000	5.8E6
30대	19.011***	1.420	179.220	.000	1.8E8
40대	18.517***	1.329	194.167	.000	1.1E8
50대	20.126	.000			5.5E8
[기준] 60대					
학력					
무학	-21.484	.000			.004
초졸	-2.437	1.722	2.002	.157	.087
중졸	-2.472	1.525	2.628	.105	.084
고졸	-.811	1.198	.459	.498	.444
대졸	.460	1.165	.156	.693	1.583
[기준] 대학원졸					
직업					
무직,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349	.677	.265	.607	.706
[기준] 사무직, 교육직, 기타					
소득					
300만원 미만	1.231	1.022	1.452	.228	3.425
[기준] 월 300만원 이상					
미성년자녀					
없다	-2.870*	1.318	4.746	.029	.057
[기준] 있다					
자녀					
없다	3.236*	1.459	4.921	.027	25.437
[기준] 있다					
결혼기간					
1년 미만	6.061*	2.536	5.712	.017	428.617
1년 ~5년	4.167*	2.138	3.798	.050	64.518
6년~10년	2.690	2.008	1.796	.180	14.736
11년 ~ 20년	3.016	1.930	2.442	.118	20.403
21년 ~30년	5.014*	2.022	6.152	.013	15.0537
[기준] 31년 이상					
별거여부					
유경험	2.263	1.686	1.802	.179	9.610
[기준] 무경험					
별거기간					
6개월 미만	-.361	.645	.313	.576	.697
[기준] 6개월 이상					
이혼고려					
고려해 보았음	.161	.969	.028	.868	.851
[기준] 고려해 보지 않음					
이혼 요구 자발성					
본인 혹은 양방 요구	-.212	.767	.076	.783	.809
[기준] 상대방만이 요구					
이혼숙려제 인식					
전혀 모름	1.195	.866	1.902	.168	3.302
[기준] 알고 있음					
법률상담요구					
필요하다	.098	.749	.017	.896	1.103
[기준] 필요하지 않다					
가족생활상담					
필요하다	2.367***	.724	10.680	.001	10.666
[기준] 필요하지 않다					
모델 적합도	Nagelkerke R Square $\chi^2$		.543 56.910 (df=27), p=.001		

\* p<.05 \*\* p<.01 \*\*\* p<.001

을 못 미치고 있는 반면에, 자녀 관련변수들-자녀의 유무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유무-은 유의한 수준에서 심리상담의 요구를 예측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이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서로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준집단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와 비교해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은 -2.870의 회귀계수를 보여주었고 이 값은 유의하였다 (Wald=4.7469,  $p < .05$ , Odds Ratio=.057).

즉, 뒤집어 설명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이 좀 더 심리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호의적인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와 비교하여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은 좀 더 심리상담에 대해 호의적으로 나타났는데, 3.236의 회귀계수를 보여주었고 이 값은 유의하였다 (Wald=4.921,  $p < .05$ , Odds Ratio=25.437). 무자녀의 응답자들이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 비해 심리상담의 요구를 표출할 기회는 대략 25배 가량 높았다.

응답자의 결혼기간에 따라 심리상담요구의 유무가 유의하게 달랐다.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이었던 황혼이혼집단과 비교하여 나머지 결혼기간에 의해 나누어진 집단들은 높은 심리상담요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의 응답자들, 1년에서 5년 사이의 응답자들과 21년에서 30년 사이의 응답자들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황혼이혼의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들은 6.061의  $\beta$  값을 가지고 있었고 5.712의 Wald값과 무려 428.617의 Odds Ratio를 보였다. 또한 황혼이혼의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결혼기간이 1년에서 5년이라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4.167의  $\beta$  값을 가지고 있었고 3.798의 Wald값과 64.518의 Odds Ratio를 보였다 ( $p < .01$ ). 또한 21년에서 30년인 응답자들은 5.014의  $\beta$  값을 가지고 있었고 6.152의

Wald값과 무려 15.0537의 Odds Ratio를 보였다. 결국, 황혼이혼과 비교하여 혼인기간이 짧은 응답자들이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를 표출할 확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예로, 황혼이혼과 비교하여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가 428배 높았고, 1년에서 5년의 결혼기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는 대략 65배가 21년에서 30년의 결혼기간의 응답자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는 15배 높았다.

별거의 여부 그리고 별거기간은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별거경험이 없던 응답자 보다 별거 경험이 있는 경험자가 심적 고통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기회는 9.6배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별거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응답자에 비교해서 별거기간이 6개월 미만의 응답자들은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를 덜 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와의 갈등 그리고 주변의 상황적 갈등에 의해서 심리적 고통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궁이 가는 결과로 여겨지나, 역시 통계적으로 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혼의 고려 그리고 이혼 요구의 자발성 역시 심리상담의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고려해 보지 않은 참가자보다 이혼을 고려해 보았던 참가자가 좀 더 심리적 상담에 대한 요구를 표출할 것 같았다 ( $\beta = .161$ , Wald=.028,  $p > .05$ , Odds Ratio=.851). 이혼이 비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 상대방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심리상담요구가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자발적 이혼의 경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 $\beta = -.212$ , Wald=.076,  $p > .05$ , Odds Ratio=.809).

이혼숙려제의 인식 역시 심리상담의 요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는 기준 집단의 응답자들과 비교해서 이혼숙려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자들이 심리상담의 요구를 표출할 확률은 대략 3.3배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른 상담관련 요구와 심리상담의 요구를 살펴보면, 각각의 상담요구가 상호 연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상담에 요구가 있는 응답자들은 심리상담의 요구가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법률상담의 요구가 없던 경우보다 1.1배 높았다. 가족생활상담에 관한 요구의 경우, 기준집단인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참가자들보다 가족생활상담을 필요로 하던 응답자들이 동시에 심리상담 역시 필요로 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10배 정도 높았다. <표 8>에 제시된 모델에 의하면, 가족생활상담의 필요도는 2.367의 회귀계수값과 10.680의 Wald값 그리고 10.666의 Odds Ratio를 보이고 있는데 이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었다.

## V. 요약 및 결론

이혼숙려제도가 도입, 실시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혼율이다. 1997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이혼은 최근 2-3간은 감소 또는 정체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0-30년 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혼의 양상 역시 달라지고 있다. 이혼자들이 이혼전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문제의식 없이 이혼경험을 함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혼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것이 이혼숙려제도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이혼숙려제도는 이혼전후과정에 외부의 전문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혼당사자들이 현재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이혼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 자녀문제, 정서적 문제 등에 적절히 개입하여 이혼 후에 겪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켜 이혼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지 4년째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도입당시에 도입여부에 대한 일부 관심을 보여주었을 뿐 제도시행이나 정착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숙려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혼 전에서부터 이혼 후까지 전체를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부부 당사자들이 이혼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은 모든 국가정책과 제도도입의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혼율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에서 관 주도형으로 형성된 제도 중 하나이다.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혼고려 또는 대상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제도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도 수혜자 입장에서의 이 제도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이혼숙려제가 진정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이혼관련 법률상담 기관을 내방한 이혼고려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개인적 특성, 이혼관련 경험이나 특성 등이 이혼숙려제도를 인식하고 필요로 하는데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테스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이혼숙려제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은 결혼불안정성, 연령, 학력, 직업, 별거기간, 이혼요구의 자발성, 등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고 있었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예측변인들에 의해서 이혼숙려제의 필요성변이의 58%가 설명되고 있었다. 모델에서 결혼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결혼숙려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에 의한 차이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초등학교학력의 응답자보다 이혼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무직, 단순노무직,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결혼숙려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기간 6개월 미만의 응답자들이 6개월 이상 별거한 응답자에 비해 이혼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찬스는 4.7배 높았다. 상대방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이혼을 본인이 혹은 배우자와 함께 요구할 경우 좀 더 결혼숙려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할 것 같았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제시된 모델에서 남성인 경우,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의 집단이, 자녀가 없는 집단이, 별거를 경험한 집단이, 이혼숙려제에 대해서 들어봤던 경우가 그 준거집단과 비교해서 이혼숙려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혼관련 상담의 3가지 유형이 이혼숙려제의 필요성 예측모델에 예측모델로 투입되었기에 각각의 상담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모델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 중, 심리상담 예측 모델만이 본 연구의 조사 자료와 적합성 검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심리상담 필요성의 인식은 결혼불안정성,

연령, 학력, 별거기간 등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고 있었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예측변인들에 의해서 심리상담 필요성변이의 54%가 설명되고 있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심리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수록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표출할 확률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사람들보다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표출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결혼시간이 30년 이상이었던 황혼이혼집단에 비교해서 결혼기간이 1년 미만의 응답자들, 결혼기간이 1년과 5년간의 그리고 21년과 30년간의 응답자들이 높은 심리상담의 요구를 표출하였다. 가정생활 상담의 요구를 피력한 응답자의 경우 동시에 심리상담의 요구를 표출할 확률은 가정생활 상담의 요구가 없는 경우보다 10배가 높았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결혼불안정성이 낮을수록 심리상담의 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집단이, 월소득 300만원 미만의 집단이 별거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 별거를 경험해 본 집단이, 이혼을 고려해 본 집단이, 이혼숙려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집단이, 법률상담요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집단이 그들의 준거집단과 비교해서 심리상담요구를 피력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학력수준이 낮은 초졸, 중졸, 고졸의 집단일 경우, 무직, 단순노무직 그리고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집단인 경우, 별거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집단인 경우, 자발적 이혼과정이 진행되는 경우 준거집단과 비교해서 심리상담의 요구를 표출할 확률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본 절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개인적 특성에 관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종사자의 언급에 따르면 기관 내방

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학력이나 연령은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미혼자녀가 있으며, 결혼기간이 신혼기보다는 6년 이상이다. 또, 절반 이상이 현재 별거중이거나 별거경험이 있고 이혼을 고려한 점이 처음이고,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들의 특성에서 이혼관련 상담기관 내방자들이 결혼생활에 지속해오는 동안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별거를 시도하였으나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별다른 개선을 이루지 못하여 이혼 자체를 직접 시도하는 것은 참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상담기관이 아니라 법원의 협의이혼기관으로 방문하게 된다면 이혼취하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기회를 숙려기간동안 전문가와의 상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관계 개선이 될 수 있고 현재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강제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담기관 또는 법원에서의 상담을 특정기간 의무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각 법원에서 이혼상담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상담 권고를 하고 있으나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는 있음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결혼생활의 회복여부를 판단하여 이혼상담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혼숙려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나 필요성 여부는 50%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혼숙려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현재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유가 많았다. 이혼숙려제의 필요성의 유무는 결혼의 불안정성, 직업수준, 별거기간, 이혼요구의 자발성, 그리고 심리상담 요구유무에 의해서 예측되었다. 즉, 결혼불안정 수준이 낮고, 전문직이고, 별거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자발적인 이혼요구인 경우심리상담 요구가 있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 이혼숙려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고 요구도가 높은가를 밝힐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숙려기간동안 이혼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부 상호간, 그 외 나머지 가족구성원들이 이혼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부분을 상담함으로써 이혼결정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이혼상담에서 자녀나 양가부모, 친인척 및 사회적 관계에 이혼이 주게 될 파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이 단지 두 사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혼숙려제를 통한 상담 활동은 불필요한 이혼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이혼과정에 있는 당사자들의 고통도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대비나 이혼과정에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완화시키는 기간으로서의 이혼숙려제를 활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즉, 결혼불안정성이 높고, 별거기간이 길고, 이혼요구가 자발적인 대상자일 경우 이혼숙려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관계 회복을 할 의지가 없음으로 이혼과정에서 재정적, 심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적응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이혼숙려기간 중에 상담서비스 내용에 대한 논의점이다. 본 연구결과 응답자들은 법률, 가족생활, 심리상담의 필요성 모두를 제기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변인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았던 심리상담 요구유무는 나이, 자녀의 유무, 미성년자녀의 유무, 혼인기간에 의한 것이었다. 즉, 연령이 20대-30대의 자녀가 없고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심리상담 요구가 높았고, 연령이 40대이면서도 결혼 21년에

서 30년 사이의 계층 역시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의 이혼율이 특성과도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다. 결혼 20년차 이상의 황혼이혼의 증가와 신혼기 이혼이 많은(통계청, 2008)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이혼숙려제도에서 이 기간의 해당부부의 이혼상담시에 적극적인 심리상담 개입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의 중재의 중요성이 제시된다. 즉 이혼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한 뒤, 추후적인 접근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부부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할 경우 초기에 부부관계가 나빠질 경우보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초기의 상담을 통한 지원과 갈등의 해결의 모색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별거기간이 6개월 미만의 응답자들이 별거기간 6개월 이상의 응답자들보다 이혼숙려제의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의 예측모델의 결과 역시 이러한 초기 중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로, 젊은 연령층인 20대와 30대 그리고 혼인기간 1년 미만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은 신혼기의 기혼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리고 이혼숙려제도는 불필요한 이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두 번째 논의와 세 번째 논의점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점인 이혼숙려제도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나 이혼관련 상담전문가 선정에 대한 점이다. 현재 각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전문상담원을 비치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단회성이거나 형식적인 상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혼상담

은 단회성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용이하지 않음으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숙려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이혼당사자의 개인적, 결혼과정에서의 특성이 이혼숙려제의 효과성을 좌우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이혼상담 전문가가 결혼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즉, 당사자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이나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 가족관계에 대한 체계론적 이해 등이 선행되었을 때 종합적인 이혼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 전문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더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혼숙려제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기혼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1)실제로 이혼과정에 있는 대상자와 (2)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나 법적인 이혼과정 중에 있지 않은 대상자가 혼재 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분리하여 그 요구도를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혼 초기 과정 혹은 이혼의 태동과정에서와 이미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의 이혼숙려제에 대한 요구는 다를 것이고 또한 이에 따른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 생활관련 상담 역시 그 요구도와 내용이 분리 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혼과정의 특성에 따른 요구도의 분석과 변별이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중재의 역할의 제공을 위한 연

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비확률적 표집에 근거하였고 가정법률상담 관련기관의 내담자를 중심으로 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기혼성인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확률적 표본조사를 통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문지에 의한 양적자료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혼과정의 역동성에 관한 내용과 이혼숙려제의 필요성 유무를 인식하게 된 원인배경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위하여 질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구혜경(2007).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이혼 고려 및 이혼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권소영, 옥선화(2005).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자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3), 199-219.
- 3) 김득성(2002).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
- 4) 김명순(2006). 이혼과정에서 나타난 부부심리상담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미숙(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1-183.
- 6) 김상용(2004).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18.
- 7) 김주수, 김상용(2006). 친족상속법. 서울 : 법문사.
- 8) 문현숙·김득성(2000).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검증 : 집단마라톤식 과정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1), 201-214.
- 9) 성정현, 양심영(2006). 이혼숙려제의 제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과 문화 18(2), 139-163.
- 10) 박성주(2008).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 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박태영(2007).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가족치료.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논총 9, 125-158.
- 12) 오재은(2006). 가정해체의 원인과 실태파악과 가족정책 개선방안 진리논단 13, 505-526.
- 13) 이의수(2004). 이혼 전 상담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주홍(2002). 한국 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 1997년 이후 구조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희배(2008). 이혼상담과 이혼법. 서울 : 학지사.
- 16) 정수경(2008). 사회복지관 이혼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과학논총 24(1), 139-175.
- 17) 최승민(2008). 이혼자들의 이혼 실태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한석근(2005). 이혼 위기에 처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통계자료(2008). 2008 이혼 통계 결과
- 20) 한국가족문화연구원(2005), 21세기 한국가족 문제와 대안. 서울 : 경문사.
- 21)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3).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 투 고 일 : 2009년 7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8월 20일